

의안번호	2204126
의 퇴 인	김도읍의원
회 답 일	2024.11.12.
추 계 번호	24B393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6년 6,000만원~1억 2,000만원, 2030년 6,900만원~1억 3,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억 2,300만원~6억 4,500만원(평균 6,500만원~1억 2,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본 추계서의 시나리오는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에 대한 “사업대상자수”에 따라 구분됨
- (시나리오1) 입양 아동의 부모 모두에게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 급여’를 지급
 - (시나리오2) 입양 아동의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 급여’를 지급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1)	60	62	64	67	69	323	65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2)	120	124	129	134	139	645	129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제19조의7에 따른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함	의무규정
2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제1항제2호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과 제19조의7에 따른 예비양부모 양자입양 휴가 기간 중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
2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제1항제2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
- 공포 후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본 추계서의 작성 시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입양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4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입양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입양휴가 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개정안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입양휴가 급여의 지원 단가 및 지원기간과 수급자 수를 추정하여야 하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
 - (지원단가) 개정안은 입양휴가에 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단가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 현행법상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원단가는 통상임금으로 이 중 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5일간 401,910원으로, 2025년 계획안 기준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지원단가는 1일당 80,382원임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2024.11 기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8	3.8

- 2025년 계획안 기준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개정안에 규정된 5일에 한하여 산출
- (수급자 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입양을 한 자에 대한 정보 및 국내에서 자녀를 입양한 부모의 고용보험 가입현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자료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음
 - 동 개정안과 함께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122호)에 따른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거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 근로자가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등의 참여 목적으로 받는 휴가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이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며, 실제 추진 경과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참고로,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는 예비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제도임²⁾
 - 통계청 자료에 따른 국내외 입양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229명의 아동이 입양되었고, 이 중 국내로 입양된 경우가 150명, 국외로 입양된 경우가 79명으로 나타남
- 본 추계서는 최근(2019~2023년) 통계청 국내 입양현황의 평균값(241명)을 토대로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에 대한 “사업대상자 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산출
 - (시나리오1) 아동을 입양하는 부부 모두에게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 급여’를 지급한다는 전제를 토대로, 이때, 부부 모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라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시나리오2) 아동을 입양하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 급여’를 지급한다는 전제를 토대로 산출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 2023.06.30.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입양휴가 대상자 수가 변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2023년 기준 출산휴가 수급자 중 우선지원대상자의 비중(59.5%)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2] 국내외 입양현황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	387	260	226	182	150
국외	317	232	189	142	79
합계	704	492	415	324	229

자료: 통계청

[표 3]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 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입양아 수(A1, 명)		241	241	241	241	241	—	—
입양 부모 수(A2, 명)		482	482	482	482	482	—	—
우선지원대상자의 비중(B)		59.5%	59.5%	59.5%	59.5%	59.5%	—	—
사업대상자 수 (C=A×B)	시나리오1 (C1, 명)	143	143	143	143	143	—	—
	시나리오2 (C2, 명)	287	287	287	287	287	—	—
월평균 지원단가(D, 만원)		8.35	8.66	8.99	9.33	9.69	—	—
지급기간(E, 일)		5	5	5	5	5	—	—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1) (F1=C1×D×E, 백만원)		60	62	64	67	69	323	65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2) (F2=C2×D×E, 백만원)		120	124	129	134	139	645	129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Ⅲ.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계획안 기준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지원단가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지원단가의 변화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명목임금상승률의 변화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사용요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될 경우 지급액 및 지원대상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입양휴가 대상자 수의 변화로 인한 적용대상자 수의 증감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